24. 12. 16. 오후 2:12 인쇄

## 병역처분기준

## 병역 처분 기준

##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

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7급
현역병입영 대상		보충역	전시근로역	병역면제	재신체검사	

<sup>※ &#</sup>x27;21. 2. 17.부터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

## 신청 등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

보충역 대상	보·모·배우자 또는 형제·자매 중 전몰군경·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·공상군인이 있는 경 우 1인*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은 사람	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 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	
전시근로역 대상	고아, 귀화한 사람*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삼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*	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 련 서류 심사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	
병역면제	<u>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</u>		

<sup>\*</sup> 보충역 편입 등 '병역복무 변경·면제 신청서'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

<sup>※ 2022</sup>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 기준을 적용

<sup>※</sup> 고아, 귀화 사유로 전시근로역이 된 사람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로 병역면제 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 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

<sup>※</sup>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원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

<sup>(</sup>단, 수형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은 비대상)